KFCC-R-02 2015.12.22.

TM

산림인증

KFCC/00-001

산림인증표준 개발 규칙

한국산림인증위원회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전화 : 02-6393-2758

팩스 : 02-6393-2718

홈페이지 : https://kfcc.kofpi.or.kr

문 서 명 : 산림인증표준 개발 규칙

문서번호 : KFCC-R-02

승 인 :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승 인 일 : 2015. 12. 22.

목 차

제 1 장 총칙 ····· **1**
제1조(목적) ····· 1
제2조(적용범위) ····· 1
제3조(참고표준) ····· 1
제4조(책임과 권한) ····· 1
제5조(한국산림인증위원회 및 표준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2

제 2 장 인증표준 개발의 원칙 및 절차 ····· **2**
제6조(인증표준 개발 원칙) ····· 2
제7조(인증표준 개발 절차) ····· 2
제8조(기록관리) ····· 4
제9조(인증표준의 개정) ····· 4
제10조(불만처리) ····· 4

[별표 1] 인증표준 개발 절차 ····· 6

산림인증표준 개발 규칙

제　　정　2015. 12. 22.
개　　정　2018. 11.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 제8조에 근거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림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산림인증표준의 제·개정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흥원의 한국산림인증위원회가 운영하는 인증제도에서 사용되는 산림인증표준(이하 “인증표준”이라 한다)을 제·개정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참고표준) 인증제도에 사용되어지는 인증표준의 개발과정은 PEFC(Program for the Endorsement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상호인정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PEFC ST 1001:2010 Standard Setting-Requirements
2. ISO/IEC Guide 59:1994 Code of good practice for standardisation
3. ISO/IEC Guide 2:1996 Standardisation and related activities

제4조(책임과 권한) ①산림인증표준 개발과 관련한 한국산림인증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표준분과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심의·의결
2. 인증표준 승인
3. 기타 인증표준 제·개정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

②산림인증표준 개발과 관련한 표준분과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증표준(산림경영인증 및 CoC인증) 제·개정안 개발
2. 인증표준의 시범 적용
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③사무국장은 인증표준과 관련한 한국산림인증위원회 및 표준분과위원회의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및 실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인증표준안의 협의 및 인증표준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산림인증위원회 및 표준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한국산림인증위원회 및 표준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며, 특히 표준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표준분과위원들이 인증표준의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표준분과위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하여야 한다.

2. 표준분과위원들이 표준작업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작업안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표준분과위원들의 의견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모든 결정은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증표준 개발의 원칙 및 절차

제6조(인증표준 개발 원칙) ①인증표준 개발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인증표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모든 의견은 인증표준 개발과정(프로세스)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인증표준 개발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인증표준 개발규칙 및 모든 단계에서의 정보는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인증표준 개발규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표준 개발 절차) ①인증표준 개발과정은 [별표 1]과 같다.

②한국산림인증위원회는 인증표준 개발 목적 및 범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문서화 하여야 한다.

③한국산림인증위원회는 2항에서 파악한 이해관계자를 핵심 이해관계자 및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자로 구분하고 이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약조건을 파악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표준 개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④한국산림인증위원회는 웹사이트와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증표준 개발의 시작을

공지하고, 3항에서 파악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인증표준 개발 공지와 이해관계자 초청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증표준 개발 절차에 대한 목적, 범위, 단계와 개발일정에 대한 정보
2. 핵심 이해관계자 및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자에게 이해 가능한 방식의 정보 제공 및 초청
3. 이해관계자가 인증표준 개발과정과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표준 개발과정에 참여 및 이들의 대표자를 표준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는 정보
4. 인증표준 개발 절차에 대한 공개 가능한 참고 자료

⑤한국산림인증위원회는 인증표준 개발을 공식 선언한 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인증표준 개발과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분과위원회에 참여를 신청하거나 지명된 이해관계자 중에서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별로 5명씩 총 15명 내외로 표준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분야별 이해관계자 그룹에는 산업계, 산주, 학계 또는 연구기관, 시민환경단체가 편중되지 않고 최소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표준분과위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⑥이해관계자에 관한 표준분과위원회의 구성방식은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2항의 1호와 2호에 의한다.

⑦참여 의사 및 관심을 표현한 이해관계자가 표준분과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개적 의견 수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⑧표준분과위원회는 인증표준 개발과정에 따라 인증표준안을 개발하여야 하며, 인증표준은 다음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작업표준안 : 표준분과위원회 내에서 의견 또는 투표를 위해 제안된 표준
2. 질의표준안 : 시범적용 후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된 표준
3. 최종표준안 : 최종승인을 위해 제안된 표준

⑨표준분과위원회는 작업표준안의 시범적용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표준안에 포함된 특정 조건과 상황 등의 내용에 기초하여 시범적용 대상 현장과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표준분과위원회는 시범적용 후 시험결과를 토대로 작업표준안을 개정하여야 한다.

⑩표준분과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질의표준안을 작성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 및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은 웹사이트와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정해진 시기에 공표하여야 하고, 총 의견 수렴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으로 한다.

⑪의견 수렴 시, 한국산림인증위원회는 핵심 이해관계자 및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이해가능하고 전달 가능한 방법으로 이들을 초청하여야 한다.

⑫표준분과위원회는 의견 수렴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과 이에 대하여 표준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의 개요를 웹사이트와 같은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⑬표준분과위원회는 최종표준안에 대한 합의를 위해 특정 이해관계자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고려하여 투표권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두투표 또는 거수투표를 위한 대면회의

2. 구두투표를 위한 전화회의

3. 서면회의

⑭최종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가지고 해결한다.

1. 표준분과위원회 내에서 타협을 위한 토론과 협상

2. 타협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직접 협상

3. 불만 및 이의처리 규칙에 따른 해결

⑮한국산림인증위원회는 표준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초로 최종표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⑯한국산림인증위원회는 인증표준 개발 과정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승인된 인증표준과 함께 웹사이트 및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리) 한국산림인증위원회 및 표준분과위원회는 인증표준 개발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록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표준의 개정) ①한국산림인증위원회는 인증표준을 5년 주기로 검토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인증표준의 개정 절차는 제7조의 인증표준 개발 절차와 동일하며, 개정된 인증표준에는 표준의 시행일자 및 유예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인증표준은 제·개정 후 1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인증표준의 실행이 더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예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0조(불만처리) 인증표준의 제·개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는 불만 및 이의처리 규칙에 따른다.

부 칙<2015.12.22.>

이 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표준 개발 절차 (제7조 제1항 관련)

